

Tax News Flash

November 7, 2024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세제 변화 및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세제 변화

2024년 11월 5일 (미국시간) 치루어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활동 당시 공개한 선거공약집 "Agenda 47" 및 각종 선거유세 현장에서 내놓은 조세 관련 사항과, 공화당에서 추진 중인 여러 세법개정안을 고려 시 조세정책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바, 국내 및 국제조세 항목별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한편, 이로 인해 미국진출 국내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의 이러한 조세정책이 향후 미국 정세에 따라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이며, 미국 입법부를 통해 실제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 하 새로운 조세정책이 한국 국내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p>법인세법 관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x Cuts and Jobs Act (이하 "TCJA") 중 법인세 관련 조항 유지 및 과거에 만료된 조항 일부 복원 (아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발효된 TCJA 연방 법인세 인하 (과거 35%→현행 21%) 조항 유지 ○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Bonus Depreciation 조항 (2022년 말 만료) 복원 •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p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노동자를 고용한 미국 내 생산 기업은 15%까지 추가로 인하 • Inflation Reduction Acts (이하 "IRA") 철폐 내지 축소 • 대규모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세금 부과 <p>(*) 미국 내 생산 기업의 중장비 및 기타장비 (Heavy Machinery and Other Equipment)</p> |
| <p>관세 (Tariff) 관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수입품에 대한 관세 10~20% 추가 부과 및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추가 부과 • 트럼프 상호무역법 (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통해 무역상대국과 동일한 관세 부과 • 무역 결제통화로 달러 외의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에게 관세 100% 추가 부과 • 멕시코산 차량 및 멕시코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차량제조업체에 100% 추가 관세 부과 |
| <p>국제조세 관련 (공화당 정책)</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율 등을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유효세율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LTI^(*): 2026년 기준 유효세율을 13.125%에서 12.5%로 인하 ○ FDII^(*): 2026년 기준 유효세율을 16.4%에서 12.5%로 인하 ○ BEAT^(*): 현행 규정상 유효세율 10.5%에서 2026년 기준 12.5%로 인상 유지 <p>(*)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 미국모회사의 해외자회사 소득 중 해당 기업의 유형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형자산 소득으로 간주하여 미국모회사에 과세하는 제도</p> <p>(*) 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 ("FDII"): 미국기업이 창출한 해외소득 중 유형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p> <p>(*) 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BEAT"):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미국 자회사 등이 해외 모회사 등 관계사에 지급하는 특정 비용에 대해 이를 세무상 비용으로 불인정하여 최소 10%의 유효세율이 되도록 하는 제도. 민주당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 SHIELD 규칙을 도입하여 폐지하고자 함</p> |
| <p>개인 소득세 관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말 만료되는 TCJA의 개인소득세 관련 감면 규정 영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소득 최고세율 현행 37% 유지 (TCJA 만료 시 2026년부터 39.6%) ○ 자녀세액공제 \$2,000 유지 (TCJA 만료 시 2026년부터 \$1,000) ○ 표준공제액 현재 금액 유지 (TCJA 만료 시 2026년부터 최대 \$13,300 감소) • 사회보장소득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각종 세금 폐지 • 팀 소득 비과세 •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일시 제한 |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부유층과 기업에 유리한 세금인하를 강조하며 세금과 규제의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선거 공약집인 "Agenda 47" 및 유세 시 각종 발언들을 살펴보면,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추가 인하하는 한편, 미국 노동자를 통한 미국내 생산법인의 경우 15%까지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바, 미국 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Tax Cuts and Jobs Act (이하 TCJA) 관련 2025년말 기한 만료되는 법인세 관련항목의 유지 (예를 들어 연방법인세율의 경우 연장되지 않을 경우 기존 35%로 상향) 및 이미 기한 만료된 Bonus Depreciation 규정의 재도입을 제안하는 등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IRA 등 이미 폐지화되어 실행되고 있는 세제혜택 규정의 폐지 내지 축소를 주장하는 점을 고려 시 해당 세제혜택 존속여부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IRA의 폐지 등은 상/하원 동의를 필요하며 IRA 수혜지역이 주로 공화당 의원 지역구라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조세와 관련되어 공화당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때, 비록 상향폭이 기존보다 인하되었더라도 GILTI, FDII 및 BEAT 규정에 따른 실효세율이 2026년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이로 인한 기업 세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비록 이러한 규정이 한국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지주회사를 통한 북미 내지 중남미 투자구조를 가진 국내 글로벌기업의 경우 GILTI 강화로 인한 추가세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FDII 축소효과로 인해 미국거점을 통한 해외 수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동 수출구조의 세무 효율성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러한 친(親) 기업적인 정책들과 동시에 "America First" 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국수주의적 행보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소 6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며, 트럼프 상호무역법 등을 근거로 각종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바, 무역분쟁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경우, 위에서 언급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세무상 영향의 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미국 세제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여 현명한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삼일회계법인 Tax Leader 이 중 현

Contacts

김 주 덕

michael.kim@pwc.com

02-709-0707

김 흥 현

hong-hyeon.kim@pwc.com

02-709-3320

박 광 진

kwang-jin.park@pwc.com

02-709-8829

박 인 대

seongdeok.kong@pwc.com

02-3781-3268

성 시 준

si-joon.x.sung@pwc.com

02-709-0284

이 동 열

dong-youl.lee@pwc.com

02-3781-9812



삼일PwC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다양한 산업과 경영환경에 대한 인사이트와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Samil PwC newsletter has been prepared for the provision of general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clients of Samil PwC and does not include the opinion of Samil PwC on any particular accounting or tax issues.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or discussion concerning the content contained in the Samil PwC newsletter, please consult with relevant experts.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here [unsubscribe](#).

© 202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